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

의안 번호	271
----------	-----

발의년월일 : 1997. 4.

발 의 자 : 차익준 의원의 3 인

1. 제안이유

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파주시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절차를 정함(안 제5조)
- 다. 자문위원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의회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법률, 환경, 건축, 도시, 농·축산, 예산·회계, 사회복지, 기타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 (자문위원의 정수) 제2조 제1항에 의한 위원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자문사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사안의 자문
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자문

제5조 (자문절차) ① 의원이 제4조의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해당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을 의뢰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의장은 자문내용을 자문을 신청한 의원 및 전의원에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위원을 직접 면담하여 자문을 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결과 통보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에 대한 예우)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의회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행사의 초청
2. 의원 간담회, 위원회 간담회시 초청하여 의견 제시의 기회제공
3. 전체 자문위원 초청 격려
4. 기타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7조 (대장의 비치)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위원 위촉기간에 대한 특례) 제2조③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구성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추 천 서

성 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직 위	
주 소			
주 요 경 력			
기 간	경 력 사 항	기 간	경 력 사 항

위 사람을 파주시의회 분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99 . . .

추천자 : 파주시의회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2호 서식 】

위 축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파주시의회
위촉합니다.

분야 자문위원으로

199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자 문 신 청 서

신 청 인	소속위원회	
	성 명	
제 목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자 문 결 과 통 보 서

신 청 인	소속위원회			
	성 명			
자 문 위 원		자 문 분 야		
자 문 내 용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상임위원장) ①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7 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는 존속한다.

제 8 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선임) 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 10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

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11 조(간사) ①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12 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번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 13 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한다.

第6節 委員會

第50條 (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査·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특정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査·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51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특정한 案件을 審査한다.

第52條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3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중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54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7節 會議

第55條 (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56條 (議決定足數) ①議事は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7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

(후 46)